

“2021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우편교육) 위탁용역”

과업 내용서

2021. 08.



안전보건그룹

목 차

I. 과업 개요	1
1. 사업명	1
2. 사업 기간	1
3. 추진 목적	1
4. 교육 대상	1
5. 교육 장소	1
6. 교재발송 장소	1
7. 교육 내용	1
II. 과업 수행에 따른 준수 사항	2
1. 용어의 정의	2
2. 교육 관련 지원사항	2
3. 계약변경	3
4. 청렴이행	4
5. 보안 및 비밀유지	4
6. 과업의 사전승인	4
7. 과업수행 경과보고	5
8. 착수 및 준공 관련 제출문서	5

1. 사업명

- 2021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우편교육) 위탁용역

2. 사업 기간

- 계약 시작일로부터 ~ 2021년 12월 31일까지

3. 추진 목적
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에 의거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해 “우편교육” 방법으로 진행하며,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교육내용을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있다.

4. 교육 대상 :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 관리감독자 약 640명

- 교육대상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5. 교육 장소

- 각 사업소 교육장

6. 교재발송 장소

-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, 208호(운서동, 제2합동청사)

7. 교육 내용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-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-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 -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, 강의능력 향상,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

※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/3이하에서 할 수 있다.

II 과업 수행에 따른 준수 사항

1. 용어의 정의

- 본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를 “발주자”라 하고,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.
- “대표자”라 함은 본 계약의 “계약상대자”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.
- “용역”이라 함은 “2021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우편교육) 위탁용역”을 말한다.

2. 교육 관련 지원사항

-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우편통신교육(16시간)으로 진행한다.
- 사업기간 내 교육기간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10월 31일 까지로 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우편통신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교육 개시전에 발송해야하며, 교육과정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시작 및 평가(시험 등)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대상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우편통신교육 이수에 대한 검증방안(온라인 시험 등)을 제시 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에 대해 직무교육기관 날인이 찍힌 수료증을 발급해야하며, 이 수료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우편통신교육 수강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교육종료 후 교육효과, 교육훈련 만족도, 향후 원하는 교육 방법(집체, 우편통신, 온라인+집체), 향후 교육운영시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조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.
-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 한다.

3. 계약변경

-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“발주자”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“발주자”, “계약상대자”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*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
 - * “발주자”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 조정 · 변경 시
 - *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
 - * 기타 “발주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
- “발주자”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“계약상대자”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,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“발주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4. 청렴이행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,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직원에게 직 · 간접으로 금품(돈, 상품권, 예술품, 선물 등),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5. 보안 및 비밀유지

- 본 과업은 보안 및 비밀유지에 대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가. 보안각서 제출
 - 업체 대표자 보안각서
 -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(자필서명)

6. 과업의 사전승인

- 가. 사전승인 사항

- 계약내용(과업수행계획서 등) 변경하는 경우
- 관계기관 및 인·허가기관, 이해당사자의 의견, 협의사항과 대외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-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“발주자”의 지시나 “계약상대자”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

7. 과업수행 경과보고

구 분	보고시기 및 내용
착수보고	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과업 착수 ※ 착수보고서는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며, 일정표, 참여인력 현황 및 보안각서 등 포함
중간보고	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※ 현황 및 사례조사, 검토결과 개선방안 수립
최종보고	준공기한 3일 전까지 과업의 최종결과 보고

8. 착수 및 준공 관련 제출문서

- 계약 상대자는 착수 및 준공 시 다음의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계약체결 후 : 착수계, 공정예정표, 보안각서, 책임자 선임계 등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
 - 나. 준공 시 : 준공계, 준공검사원, 준공내역서, 준공 정산동의서
※ 준공 완료기한 내 제출
- ※ 관련서식은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 홈페이지 (www.airportfc.co.kr) > 고객지원 > 입찰정보 > 공지 “인천공항시설관리(주) 과업수행관련 제출서류”에 게시